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5287942(본소), 2020가단511044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청구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최호영, 심규현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윤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8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0,357,09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원고(반소 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 C, B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청구취지 :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512,294,2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E 사이에 2019. 1.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F가 201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833호로 공탁한 163,654,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반소청구취지 : 1.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의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8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 B, C의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6369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제1항, 제2항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E을 상대로 201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85호로 미지급금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A에게 32,875,8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5. E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 원고 B, C은 E을 상대로 201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63692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B에게 61,071,191원, 원고 C에게 2,157,48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18. E에게 송달되어 2019. 4. 2. 확정되었다.

(3) E은 2019. 1. 23.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512,294,2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양도사실을 2019. 2. 1. F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4) F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해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83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654,65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E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E에서 2019. 1. 5.까지 이사로서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하였는데, 그때까지 급여 22,767,410원 및 퇴직금 10,108,410원 합계32,875,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 급여 중 6,300,000원, 퇴직금 중 6,218,730원 합계 12,518,730원을 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B은 2002.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E과 전기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여 그 미수금 채권이 61,071,191원에 이른 사실, 원고 B은 원고 C의 아들이고 2018. 9. 28.부터 2019. 2.1.까지 사이에 E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그 미수금 채권이 2,157,483원에 이른 사실(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 23.기준으로 6,720,319원의 미수금채권이 남아 있었으나 2019. 2. 1. 결제되어 위 금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E을 상대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A의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0,357,090원(=32,875,820 - 12,518,730원) 채권, 원고 C의 미수금 61,071,191원 채권, 원고 B의 미수금 2,157,483원 채권은 채권자최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E의 무자력 유무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반면에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로 확인되는 채무자 E의 재무상태는 2018. 12. 31. 및 2019. 12. 31. 기준 자산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도 E은 무자력이 아니었던것으로 보인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2018. 9.경 F로부터 '세종사업장 및 천안사업장' 현장의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E과 사이에 천안사업장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전액 가져가고, 세종사업장에 대한 공사대금은 명의대여비로 5%를 공제하고 피고가 공사계약금액의 95%를 가져가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질적으로 E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E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E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을 인정하여 2019. 1. 23. 피고에게 E의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를 F에게 통지하였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E의 채권자들 중에서 피고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하나, 피고의 전적인 노력과 자금이 E의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형성에 직접 기여한 반면, E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F의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E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한 피고와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로 E의 채권자들 중 피고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함에 있어 E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하는 자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원고 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A은 E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20,357,09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A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 급여 중 6,300,000원, 퇴직금 중 6,218,730원 합계12,518,7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 중 위 금액이 남아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은 위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다. 원고 B,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C 및 B은 E에 대하여 지급명령상의 각 미수금61,071,1191원, 미수금 2,157,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반소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원고 C, B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